

2023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원) 채용 공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1명)

임용예정기관	선발직종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청사관리원	- 청사시설관리(가스 및 보일러 관리 포함) - 주간 방호업무 지원(방호원 휴게시간) - 기타 센터 요구업무 처리	1명

2. 자격 요건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 8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성별 및 경력 : 성별무관/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자 제외)
- 생활근거지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퇴근이 가능한 자

3.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급여수준
 - (청사관리원) 2,050,800원(제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명절휴가비 연1,100,000원, 맞춤형복지비 연 500,000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연장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 (청사관리원) 주5일근무, 09:00 ~ 18:00
 - ※ 단, 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처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영종도 정부기관단지 내 소재)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4. 우대 요건 및 가산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요건]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자(연차별 차등 배점)
 - 청사관리원 : 시설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청사관리원 : 시설관리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 상위 1개만 인정)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소속, 직위(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발급일, 발급기관(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증명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증명서로 제출 시 경력기간은 증명서 발행일 기준으로 산정함

[가산요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 응시자(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5. 채용 방법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3배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학위·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등
 - ※ **경력·자격·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 제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적격성 평가
 - ※ 면접장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자체적인 면접심사기준에 따른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기간제근로자로 선발, 근로계약 체결

6. 채용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23. 2. 2.(목) ~ 2023. 2. 8.(수) (09:00 ~ 18:0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등기 우편접수(e-mail 및 택배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2. 10.(금) 14: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면접시험	2023. 2. 13.(월) 14:0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14(화) 14: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합격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작성	2023. 2. 15.(수) ~ 2023. 2. 16.(목)	· 근무 개시(예정) 【23. 2. 17.(금)】

※ 상기 일정은 우리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처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3층 운영지원과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주소 : (22356)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 전화번호 : 032) 745 - 3336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원서(청사관리원)' 글자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함

7.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음)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① 제출서류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 ②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③ 직무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⑦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제7호]
- ⑧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⑨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남자는 반드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⑩ 경력증명서 등 우대 조건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⑪ 관련 자격증(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①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번호 13 자리표기)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번호 13 자리표기)
-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발행) 1부
- ⑥ 사진(반명합판 3cmX4cm) 1매

8. 참고사항

- 이력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계약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과(032-745-3336)로 연락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원)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청사관리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주민등록등·초본(남성인 경우 초본)	☐ 제출 ☐ 미제출
⑨ 우대(경력) 및 가산(저소득,국가유공자 등) 대상 관련 서류	☐ 제출 ☐ 미제출
⑩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우대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⑪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성명 : (서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귀하

응시원서

본인은 2023년도 제1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시행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3년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청사관리원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자우편		본인 (휴대전화)		가족 (휴대전화)					
○ 상기 본인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10년 (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시표			2023년도 제1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청사관리원	성명		
2023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印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청사관리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전화번호는 반드시 2개 이상 기재(본인 및 통화 가능한 가족)

직 무 이 력 서

1.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한 글) (한 자)
응시분야	청사관리원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2.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일자	퇴직일자	담당업무	담당직위 (상근여부)

3.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취업지원대상 여부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기타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서명)

직무 이력서 작성요령

1. 주요 경력사항

○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로 표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청사관리원

1) 지 원 동 기

2) 주요경력 및 업무실적

3) 자신이 청사관리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4)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상호이익이 되도록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3. . . 작 성 자 : (서명)

※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출신학교 및 출생지, 가족(친적)의 사회적 지위 등은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당해 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유(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기간(제공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3. . .

성명 : (서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청사관리원

본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해당 센터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귀하

